

4월 임시국회 주요 농정현안 요구사항

4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4월 임시국회에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4월 임시국회에는 농업관련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농지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개정안과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등 농업분야 핵심법안들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들은 향후 농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농업계의 근간을 이루게 될 핵심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과 관련해서 한농연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일부 법안들에 대해선 개정 촉구를 요구하며, 일부 법안들에 대해선 개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다루어지게 될 주요 농정현안과 올바른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편집자 주>

● 농지법 개정안

정지유전 원칙에 입각해 농지법을 개정하라!

▣ 현황 및 문제점

이번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을 폐지하여 사실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농지보전 목표, 국토관리 및 계획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할 경우 농업경영 목적으로 위장하거나 폐업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되므로 투기적 농지소유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농업 여건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여 영농 이익을

창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대규모의 자본이 참여한다면 일반 농가의 경쟁력은 더욱 취약해 질것이 불 보듯 뻔하며, 대규모 자본이 유통과 결합될 경우 일방적인 계열화가 우려된다.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 발표 이후 현재 대도시 인근과 신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부근의 우량농지 상당수가 농지전용이나 토지매매차익 등 개발이익을 노린 서울 등 대도시 출신 외지인들의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으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행정수도 건설 발표 직후 외지인의 농지 소유비율>

	연기군	공주 장기면
외지인 농지 소유비율	55.6%	70%

자료:2004.7.8

▣ 건의사항

첫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이전에 중장기적

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농지보전 목표, 국토 관리 및 계획체계 수립, 투기적 소유를 막기 위한 개발 이익환수제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의 기본정신을 살려 비농민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규제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농지소유상한, 농지 처분명령제도, 농지임대 관련 제도 현황유지 (농업인간 임대는 허용)

셋째, 농업진흥지역 등 공익적 목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농지보전 직불제 도입,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 부조와 비용 보전 등과 같은 적절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농지에 관한 모든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기능을 조정하고 종합적 체계적인 농지관리 체계의 일부로 그 성격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섯째,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의 경우 농업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임차료 상한을 수도작의 경우 평균 생산량 2할을 초과할 수 없도록 임대차 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농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농지은행을 연계해야 한다.

●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법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도록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급식에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 저가의 외국농산물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수입산 식재료의 사용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소득이 하락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 대다수의 법안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농산물 사용’의 명시는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현재 미국·EU 등 다수의 국가들이 예외규정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농산물 활용

명문화 근거

(‘05. 4. 농특위 응답보고서)

- WTO농업협정의 평화조항(제13조)에 의거해 WTO DDA협상 타결 이전까지 자국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법안에 명시할 수 있음

- WTO협정은 법리적 해석 보다 국가이익 그리고 국가간 관계는 협상차원의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며, 학교급식의 농산물 공급은 정부조달로 GATT의 ‘동등 대우원칙’의 예외조항에 해당함



▣ 건의사항

첫째,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협상에 위배되지 않음을 범정부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하라.

둘째,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최선을 다하라.

셋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있어 학교급식의 ‘3대 원칙’인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운영, 무상급식 원칙에 입각해 처리하고, 3대원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넷째,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운영제정에 있어 정부지원을 확대(정부 50%, 도 30% 시·군 20%)하라.

●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시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마련아라!

▣ 현황 및 문제점

수입농산물 등 식품의 생산·수입·유통·조리·판매에 있어 위해요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식품안전업무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환경부, 교육부, 산자부, 국세청 등 8개 부처로 분산 관리되어 식품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의 합의를 통해 식품안전기본법의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들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은 미흡하며, 현행 8개 부처의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한 기구 설립과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만드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혁신은 뒷전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안 및 보건복지부 입장의 문제점>

1)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 현행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극복
- 각 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식품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법률 및 각 부처를 총괄·조정하는 방향으로만 정리

2) 보건복지부 및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의 문제점

- 향후 식품안전관련 주요 정책을 보건복지부 의도대로 조정하고자 함
- 축산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농축산업 정책 관련 법률심의 권한과 농축산인에 대한 규제

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조항이 있어 농축산 생산 분야도 비전문기관인 복지부로 전환될 수 있음

▣ 건의사항

첫째, 위험평가부터 위험관리까지 생산정책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농축산식품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농림부 주도로 일관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사무국의 보건복지부 산하 설치, 민간위원회 면직에 식약청장 포함, 분쟁조정위원회의 복지부 산하 설치, 식품위해성 평가에 대한 식약청 고유 업무 등의 내용에 반대한다

셋째, 농축산업 관련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식품안전분쟁조정 시 농축산 인과 국내 농축산물을 활용하는 영세 식품가공업자에게는 적절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과적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민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의견 반영이 있어야 한다.

●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도입하라!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국민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입 축산물 관련 피해가 속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절실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청와대에서도 이 제도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2004년 수입물량은 11월까지 6만5천톤으로 2003년 수입량 2만8천톤에 비해 2배 이상 수입되었고 이 때문에 배추·무는 절반 이상 가격이 폭락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으며 김치 가공업자를 포함해 관련산업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4월 말에 있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요식업자 등 이해관계자를 의식해 제도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국내생산농가의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 건의사항

첫째, 4월 임시국회에서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반드시 도입되도록 여야 정치권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제도 도입 후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자에 대한 시장 완전 격리 및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 수립해야 한다.

셋째, 김치·쌀 등의 농산물에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해 국내 생산농가 및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